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설명

- 존경하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님!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산(청산)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.
- 현행 조례는 조합의 해산(청산) 계획에 관한 자료를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그런데 제출자료에 대한 공통서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미해산·미청산 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

입니다.

- 이에 조합의 해산(청산) 계획 및 추진사항 자료 제출 시 조합장은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구청장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미해산(청산) 지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